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주찬식 의원(찬성자 12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1154호
- 다. 발의일자 : 2016. 4. 25.
- 라. 회부일자 : 2016. 4. 26.

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 자치구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, 관리권자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부지를 포함한 시설물을 임의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자치구간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바,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자치구간 경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시설 및 부지에 대해 관리권자가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부지를 사용(관리목적인 경우 포함)하고자 할 때는 소유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함.(안 제6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

(1) 신구조문대비표 : 원안참조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안은 자치구 간 경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 시설의 소유권자(구청)와 관리권자(구청)가 일치하지 않아 서울시가 관리권자를 소유권자와 다르게 운영 중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, 관리권자가 부지와 시설물을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부지를 사용할 때에는 소유권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.

■ 관리권자와 소유권자간 사전협의 규정 신설(안 제6조제2항)

- 현행 조례 제6조1)에 따르면 자치구 간 경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의 경우 도로나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,

다만,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[표 1]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[표 1] 구경계 수혜구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구분(제6조 관련 [별표 1])

명 칭	위 치	해 당 구	관 리	한 계
하수관거 (관로번호 3020, 3021, 3028)	대방역(노량진로) ~ 여의교 하류	동 작 구 영등포구	동작구	주관로

1) 제6조(관리의 특례) 서울특별시 자치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,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, 그 관리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.

명 칭	위 치	해 당 구	관 리	한 계
성 내 빗물펌프장	송파구 방이동 88-13	강 동 구 송 파 구	강동구	빗물펌프장 및 우수지
장안·전농 빗물펌프장	성동구 송정동 74 (중량물재생센터내 위치)	동대문구 성 동 구	동대문구	빗물펌프장 및 우수지
하수관거 (관로번호 1094)	성동구 송정동 군자 지하차도 ~ 중량천 둔치	광 진 구 성 동 구	광 진 구	주관로
하수관거	강서구곰달래길 ~ 등촌로 ~ 제물포로 ~ 양천구 신정1유수지	양 천 구 강 서 구	강 서 구	주관로
신답빗물 펌프장	성동구 용답동 173-1외 4필지 (청계천제방 및 하천부지)	성 동 구 동대문구	동대문구	빗물펌프장 및 집수정

- 따라서, 관리권자가 시설물 또는 부지를 공사용 가시설 부지 등 타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자와의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임에도 간혹 이를 간과하여 자치구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는 상황임.
- 현황 사례로, 성내 빗물펌프장 및 우수지의 경우 공공하수도 수혜지역이자 관리권자인 강동구청이 시설물의 소유권자인 송파구청과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관로개선을 위해 시설물의 부지를 공사현장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승인함에 따라 양측 구청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임.
- 한편, 성내 빗물펌프장(우수지 포함)의 관리권자 지정 및 소유권 이전 경위는 [표 2]와 같음.

[표 2] 성내 빗물펌프장 및 우수지 소유권 이전(귀속) 경위

- 1982. 03. 20. :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
- 1988. 01. 01. : 강동구 - 송파구 분구
- 1988. 12. 22. :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
- 1993. 11. 08. : 성내 빗물펌프장 준공
- 1996. 01. 15. :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일부개정
 - 성내 빗물펌프장 관리권자를 강동구로 지정
- 2002. 01. 18. : 소유권 이전(서울특별시 → 송파구)
 - 이전원인 : 공공시설 소유권 이전(귀속)
 - 등기원인일 : 2002. 01. 03.

-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발주청이자 관리권자인 강동구청에 사용승인만을 득하고 성내 빗물펌프장 부지 일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송파구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,
 - 이에 대응하여 강동구청은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²⁾에 해당 부지에 대해 과거 「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³⁾」에 근거하여 소유권 반환 조정 신청을 한 상태임.
- 따라서, 이 사건과 같이 공공하수도 시설이 구경계 지역에 위치하면서 소유권자와 관리권자가 다른 경우 차후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담고 있다 하겠으며,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)에 의거 서울시는 현재 「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.

3) 「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63조(공공용지의 귀속)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 다만, 공공시설중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. <개정 1975.12.31.>

-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, 개정안과 같이 관리권자에게 해당시설을 타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련 부지를 사용(관리목적인 경우도 포함)할 때에는 소유권자와 사전 협의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됨.